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2. 23

제안자 : 장주식 의원외

수정이유

기금출납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기금의 통일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여 보완하려는 것임.

수정주요내용

제13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.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 2항의 “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. 다만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기술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” 를 “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부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 2항의 “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. 다만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기술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” 를 “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부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.”로 한다.